



소통하는 의정  
공감받는 의회

제39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
(제1차 교육위원회)  
2021. 9. 3.(금) 10:00

# 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안

교육위원회  
수석전문위원

# 검 토 보 고 서

## 1. 발 의 자: 김국기 의원

## 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: 2021년 8월 25일
- 회부일자: 2021년 8월 27일

## 3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 내 학생에 대한 유해약물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해약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학생들이 신체적·정신적·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기여하고 함.

## 4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 (안 제1조~제2조)
- 교육감의 책무 (안 제3조)
- 기본계획 수립 (안 제4조)
- 실태조사 (안 제5조)
- 유해약물 예방교육 등 (안 제6조)
- 위탁 (안 제7조)
- 지원 (안 제8조)
- 협력체계 구축 (안 제9조)

## 5. 검토의견

- 본 조례 개정안은 유해약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해약물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-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 조례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과 정의,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하였음.
- 안 제4조에는 유해약물 예방교육 추진사업 및 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였고, 안 제5조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해약물 접촉 경험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음.
- 안 제6조에서는 유해약물 예방교육 실시와 교원 연수, 학부모 교육, 전문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및 지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, 안 제7조는 유해약물 예방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 등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음.
-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유해약물 예방교육에 대한 행·재정적 지원, 협력체계 구축,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하였음.
- 본 조례 제정에 따라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, 특히, 유해약물 오·남용 학생이 전문기관을 통해 상담·교육·치료를 받는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.